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합격자 : 총 76명

속기직(일반) (11명)
응시번호
91000012
91000032
91000055
91000092
91000095
91000121
91000145
91000168
91000198
91000202
91000258

속기직(장애) (1명)
응시번호
91500004

사서직(일반) (14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94000027	94000520
94000254	94000530
94000345	94000577
94000363	94000580
94000377	94000622
94000447	94000634
94000448	94000681

사서직(장애) (1명)
응시번호
94500002

경위직 (9명)
응시번호
92000054
92000069
92000093
92000104
92000253
92000305
92000307
92000383
92000458

방호직 (10명)
응시번호
97000011
97000049
97000076
97000079
97000098
97000168
97000174
97000191
97000230
97000320

기계직 (4명)
응시번호
95000069
95000117
95000170
95000178

통신기술직 (1명)
응시번호
95300138

조경직 (5명)
응시번호
96000041
96000044
96000064
96000066
96000105

전산직(일반) (14명)	
응시번호	
93000039	93000363
93000051	93000439
93000161	93000502
93000301	93000560
93000308	93000595
93000332	93000605
93000346	93000653

전기직 (3명)
응시번호
95100008
95100046
95100070

안내직 (3명)
응시번호
98000102
98000105
98000243

※ 전산직(장애) 합격자 없음

※ 필기시험 합격선(Cut-line)

(단위 : 점)

속기직(일반)	속기직(장애)	사서직(일반)
68	77	77
사서직(장애)	경위직	방호직
58	78	68
기계직	통신기술직	조경직
62	60	61
전산직(일반)	전기직	안내직
일반: 72, 지방인재: 70	67	80

2. 속기직 실기시험 실시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대상	합격자발표
속 기 직	실기시험	9. 28.(화) 09:30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 (107호)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10. 8.(금)

나. 실기시험 과목 및 세부일정

- 시험과목 : 논설체, 연설체
- 세부일정

시 간	시 험 절 차	비 고
09:30 ~ 10:00	출석확인 및 시험준비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107호)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 설치·완료 ※ 시험실 09:00부터 개방
10:00 ~ 10:10	응시자 유의사항 설명	
10:10 ~ 10:20	연 습	1분 낭독
10:20 ~ 10:25	논 설 체	낭 독
10:25 ~ 10:50		답안 USB 제출·출력 확인 및 휴식
11:00 ~ 11:10	연 습	1분 낭독
11:10 ~ 11:15	연 설 체	낭 독
11:15 ~		답안 USB 제출·출력 확인 후 시험종료

※ 각 과목별 분당속도 : 논설체(1분당 300자), 연설체(1분당 330자)

※ 올해 속기직 실기시험부터 시험방식이 변경됩니다.

(‘마. 실기시험 기준 변경 안내’ 참고)

다.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을 지참하고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107호)에 출석하여야 하며,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까지**)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완료한 뒤,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시험 당일 09:00부터 시험실 개방).
※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응시생 외에는 의정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조회할 예정으로, 확진자·격리대상자는 사전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험을 앞두고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 이상증상 응시자 사전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9/23부터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인 의정관은 **국회6문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 당일 쉬는시간 혹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 및 체온측정 이후 시험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문진표 작성결과 등에 따라 시험 중지 후 별도 시간을 지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 이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응시자도 시험 도중 발열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코,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멍을 뚫는 등 마스크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응시자는 마스크, 휴지, 음용수 등 본인이 가져온 물품을 시험실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 속기직 실기시험 국회 출입 위치도



마. 실기시험 기준 변경 안내(2021년도 속기직 실기시험부터 적용)

· 변경 전

과목	낭독 및 속기	번문시간	글자수
연설체	5분	20분	1분당 320자
논설체	5분	20분	1분당 300자

· 변경 후

과목	낭독 및 속기	번문시간	글자수
연설체	5분	X	1분당 330자
논설체	5분	X	1분당 300자

3.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명	시험일자	시험장소	응시대상	합격자발표
경 위 직 방 호 직	실기시험	10.1.(금) 08:30~14:00	국회 운동장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10. 8.(목)

나. 실기시험 과목 및 세부일정

- 시험과목 : 팔굽혀펴기(회/1분) / 윗몸일으키기(회/1분) / 좌우 악력 / 100미터 달리기(초) / 1,000미터 달리기(초)
-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시 험 절 차	비 고
10. 1. (금)	08:30 ~ 09:00	출석확인	경위직/방호직 필기시험 합격자
	09:00 ~ 09:30	응시자 유의사항 설명	
	09:30 ~ 10:30	신체검사 (팔·다리의 완전성, 시력, 청력)	
	10:30 ~ 11:30	실기시험 I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1:30 ~ 12:30	실기시험 II (100미터 달리기)	
	12:30 ~ 14:00	실기시험 III (1,000미터 달리기)	

※ 상기 일정 및 세부시험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일시	제출방법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 2021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_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경위직, 방호직) 참고 - 실시기관의 양식으로 대체하여도 되나, 첨부된 검사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경위직 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신체조건 중 청력의 경우 교정 청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실기시험일 [10.1.(금)]	직접 제출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제한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신체검사 : 팔·다리의 완전성을 판단하며, 시력 및 청력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함.

마. 실기시험 체력측정기준(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7 기준)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미터 달리기 (초)	남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7.0	17.1 이후
	여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남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여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팔굽혀펴 기 (회/1분)	남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윗몸일으 키기 (회/1분)	남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여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비 고											
1. 측정된 수치 중 100미터 달리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실기시험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바. 합격자 결정(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별표 7 기준)

- 제1항의 측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매 종목 2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 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사. 측정방법 (전자측정기기 사용)

종 목	측정 방법
100미터 달리기 (초)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 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1,000미터 달리기 (초)	
팔굽혀펴기 (회/1분)	남녀 모두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양발을 모아 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이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윗몸일으키기 (회/1분)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85°(도) 이상 일으킨다.
악력(kg)	똑바로 선체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측정한다.

아.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제출서류, 신분증, 응시표 및 운동복, 운동화를 준비하여 출석확인 시간까지 국회 운동장에 대기하여야 합니다(출석확인 30분 전부터 국회 출입 가능).
- 실기시험 이전이나 실시 도중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밝은색 상의 착용**(어두운 색 상의 착용으로 인한 전자측정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스파이크는 착용 불가합니다.
- 실기시험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조회할 예정으로, 확진자·격리대상자는 사전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험을 앞두고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 이상증상 응시자 사전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9/23부터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인 국회 운동장은 국회5문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쉬는시간 혹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 및 체온측정 이후 운동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 100미터/1,000미터 달리기 종목 평가 시에만 마스크 벗는 것 허용(단, 측정 종료 후 바로 착용)
-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문진표 작성결과 등에 따라 시험 중지 후 별도 시간을 지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 이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응시자도 시험 도중 발열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 모든 응시자는 코,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멍을 뚫는 등 마스크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응시자는 마스크, 휴지, 음용수 등 본인이 가져온 물품을 시험실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 국회 출입 위치도



4. 사서직·안내직·기계직·전산직·통신기술직·전기직·조경직 면접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 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대상	합격자발표
사서직, 안내직, 기계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전기직, 조경직	면접시험	10. 18.(월)~ 10. 21.(목)	국회의사당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10. 22.(금)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10. 11.(월)에 공지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일시	제출방법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전산직(전산자격증), 사서직(사서자격증)에 한함)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일 10. 18.(월) ~ 10. 21.(목)	직접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파일명 : 9급_응시직렬_응시번호_성명.hwp	10. 14.(목) 14:00까지	전자메일로 송부 (gosi@assembly.go.kr)
지방인재 증빙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 표기한 합격자에 한함)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 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우편번호 07233) · 제출마감일자 [10. 14.(목)] 소인까지 유효 * ‘지방인재 증빙서류 안내’ 참조	10. 14.(목)	등기 우편

※ 자기소개서는 아래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기 바람, 제출시한(10. 14.(목) 14:00)까지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요건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본인의 출신지역명·학교명·직장명, 특정인의 성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 이므로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이나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시험 성적조회

- 방 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우측 메뉴 중 ‘성적조회’ 클릭
- 조회기간
 - 필기시험 불합격자 조회기간 : 2021. 9. 23.(목) ~ 2022. 9. 22.(목)
 - 필기시험 합격자 조회기간 : 2021. 10. 25.(월) ~ 2022. 10. 24.(월)

6. 지방인재 증빙서류 안내[사서직, 전산직 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에 한함]

가.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나. 학력증명서류 1부(학력기술서에 기재한 학력 중 해당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 제출)

- ㄱ.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ㄴ.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
 - 최종학력 증빙서류(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http://www.neis.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방법 : 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 온라인 발급/신청)
- ㄷ. 지방대학 졸업자
 - 지방대학 졸업증명서
- ㄹ. 지방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중퇴자의 경우 제적(除籍)증명서 :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재학·휴학자의 경우 재적(在籍)증명서 :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 지방인재 학력증명서 유효 발급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2021. 6. 1.) ~ 서류제출 마감일(2021. 10. 14.)까지 발급받은 것에 한함.

- ※ 지방인재 여부 판단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1. 6. 8.) 현재를 기준으로 함.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하거나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기 타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및 「국회 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전화 6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성 명 :

(내용).....
.....
.....
.....
.....
.....
.....
..... ~

작 성 일 : 2021. . .

작 성 자 :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A4 2매 이내)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 인적사항

응시년도	2021	응시직렬	9급 ○○직	응시번호	
성명			주민번호	-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2. 학력 사항

기 간	학교명	전 공	졸업/재적/제적	학교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 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시험응시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인)

국회사무총장 귀하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요령

1. 인적사항

- **응시번호**에는 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고, **e-mail**과 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등을 기재

2. 학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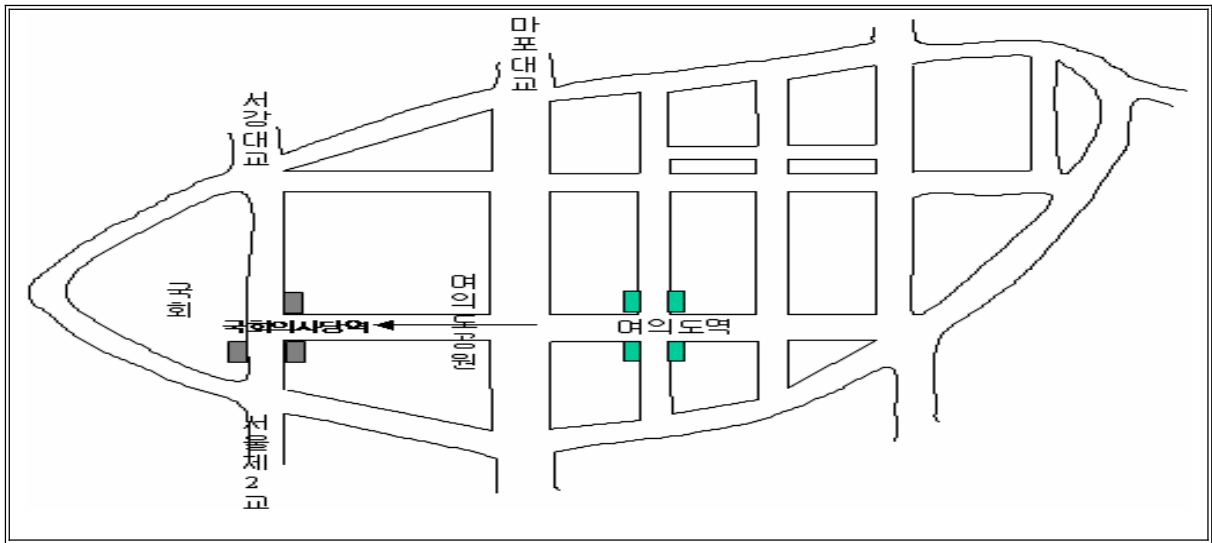
- **고교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학력사항을 시간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취학의무 면제 등으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학력없음”,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최종학력을 기재**
- **기간** : 입학 ~ 졸업/재적(재학, 휴학)/제적(중퇴) 기간을 연,월,일 기재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연,월만 기재해도 무방
 - 편입학한 경우는 입학 연,월,일 앞에 ‘(편입)’을 표시하여 기재
 - 작성 예 : (편입)2004.3.1.~2007.4.6.
 - 작성일 현재 재적(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재적일을 작성일까지로 기재
- **학교명** : 학교명칭을 모두 기재하되,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인 경우 대학명에 캠퍼스까지 기재
- **전공** : 졸업·재적 증명서 등에 표기되는 전공을 기재
- **졸업/재적/제적** : 기재한 학력이 작성일 현재 졸업인 경우는 **졸업**으로,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재적(在籍)**으로, **중퇴** 등 **제적된** 경우는 **제적(除籍)**으로 표기
- **학교 소재지** : 17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 하나로 표시

※ 학교 소재지를 기재하되 분교는 분교 소재지로 기재

3. 제출방법

- 서식에 따라 작성·출력한 후 개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학력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것
 - ※ 작성 시 휴면명조체, 12.5(글씨크기)로 할 것. 여백이 부족한 경우 글씨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음.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우편번호 07233)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02-6788-2081)

◆ 국회 위치도



- ▶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5호선 여의도역에서 택시로 5~10분 거리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
* 9호선 급행 열차는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하지 않으니 9호선 일반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경내 주차장에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 국회경내 위치도(국회 본관, 의원회관, 국회의정관 안내)

